



# 200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중점추진 시책 (Key Policies on Pine Wilt Disease Control for 2007)



임업사무관 이 대 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총력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재선충방제 정책여건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한 이래 2000년도부터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2005년 특별법 제정 및 예산대폭 증액, 소나무류 전국 이동단속 실시 등 총력방제로 2006년도에는 신규발생 시·군이 대폭 감소(05년 15개 시·군 → 06년 1개 시·군)되었고 또한, 감염목 발생 증가추세가 감소추세로 반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선충병 피해심각성과 방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 3 추진방향

첫째로 피해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방제전략을 적용하고, 소구역 군상개별을 확대하여 반복발생을 차단한다.

둘째로 방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감염목 발생 양상에 따른 맞춤형 방제를 추진한다.

셋째로 잣나무임지에 대한 신속한 발생상황 조사 및 확산차단을 위한 집중방제를 실시한다.

넷째로 감염목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 1 머리말

소나무재선충병은 2006년도 11월 까지만 해도 소나무와 해송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문헌에는 잣나무에도 감수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잣나무에 자연감염된 것은 2006. 12. 22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잣나무림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개충이 수도권에 분포되어있는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한 잣나무림의 피해일 경우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찰대상 수종이 잣나무 등 소나무류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방제전략이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2007년을 재선충병방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감소세가 확산되는 전기가 마련되도록

다섯째 방제작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방제성과를 제고한다.

#### 4 중점추진계획

##### 가.지역별로차별화된방제전략적용

부산, 경남 등 발생구역이 넓은 지역은 구역별로 외곽에서부터 중심부로 압축 방제하여 밀도를 저하시킨다.

신규발생지 및 발생구역이 소규모인 지역은 발견 즉시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소구역 근상개별 등 박멸목표로 집중 방제한다.

경기도, 강원도 등 중부지방의 잣나무임지 재선충병 신규 발생지는 긴급방제비 등을 투입하여 재확산요인을 완전 차단하도록 초기에 적극적인 방제를 실행한다.

특히, 잣나무 피해지 및 제주, 전남 목포, 영암 등 소규모 발생지는 2년이내 청정지역을 목표로 집중방제 한다.

##### 나.지역여건에맞는맞춤형방제추진

피해목처리시 훈증은 억제하고 파쇄, 소각 위주로 전환하되 훈증은 정상부위, 급경사지 등 피해목 수집이 어려운 곳에서만 허용하되 도로 및 철도변 가시권 30m이내 지역은 훈증을 금지한다.

기존 훈증목 정리를 위해 방제사업 설계시 기존훈증목 처리 비용을 반영한다.

주요 피해지역은 지방산림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지역완결 원칙으로 방제하되 통합방제 전략 수립을 위한 「권역별 방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피해선단지 및 행정구역이 연결하는 지역 등 방제작업이 취약한 지역에는 광역방제단을 투입하여 방제한다.

솔껍질깎지벌레와 재선충병 혼생지에 대한 시범방제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방제성과가 우수한 경우 타 지역으로 확대한다.

##### 다.항공방제내실화를위한개선사항

- 항공방제 횟수 : 5회 → 3~5회(선단지 5회)로 선택폭을 넓혔다.
- 희석배수 : 34배액 → 50배액(약제 1, 물 49)으로 조정하였다..
- ha당 살포량 : 34ℓ → 50ℓ 로 살포토록 개선하였다.

##### 라.예방용나무주사개선사항

- 대상지 : 피해선단지 및 반복발생 우량 임지를 선정한다.
- 약제주입 : 주입병사용 → 나무에 구멍을 뚫고 직접 주입 한다.
- 나무주사전용 자동운척 개발 보급으로 공정 개선(4인1조→3인1조)

##### 마.감염목조기발견을위한예찰활동강화

예찰조사용 GPS장비를 보급하여 연중 정밀 지상 및 항공예찰을 실시하고 지자체, 지방청, 국립산림과 학원 등으로 구성되는 항공예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예찰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연중 사역하는 광역방제단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바. 방제작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방제성과 제고

시민단체 및 산림관련 단체 등을 통한 방제작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방제작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담당자는 포상과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방제작업 우수업체는 방제계약 발주시 수의계약 등 우대조치를 하고 부실업체는 퇴출 등 엄정하게 집행한다.

그리고 방제작업 후 2년간 추가 피해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포한다.

## 사. 시험연구 등 방제사업 내실화 추진

재선충 감염여부 조기진단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 사업단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실적이 부실한 분야는 퇴출 조치 하는 등으로 질적 향상을 기한다.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연구 추진시에 재선충병 방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 아. 방제작업의 품질향상도모

재선충 방제작업지에 대한 현지 지도강화로 방제 작업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방제작업 완료 후 철저한 준공검사 실시로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한다.

※ 2007년도 재선충방제사업 추진일정

- 재선충병 방제 담당자 실무교육 : 1.23
- 재선충병 특별예찰조사 실시 : 1월
-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 춘기 4월 말까지, 추기 12월 말까지
- 항공방제 실시 : 5~7월
- 방제작업지도 · 평가 : 2회(5월, 10월)

## 5. 한국 조경수협회 회원님이 협조해주실 사항

직경 2cm이상의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생목, 원목, 제재목 등은 이동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동제한 단속대상이므로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목의 벌채 및 굴취허가 등에 따른 이동
  -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사업장 이외 지역 이동 금지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벌채 · 굴취허가 등을 얻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3조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를 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의 벌채 · 굴취 이동
  - 반출금지구역내의 벌채 · 굴취로 생산된 소나

무류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금지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극인찍기(생산확인표)를 하여야 한다.
- 조경수 및 분재
  - 반출금지 구역인 경우
    -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
  -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인 경우
    - 감염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하여야 한다.

## 6. 맺는말

산림에 피해를 주는 원인은 산불, 산림형질변경, 도남벌, 병해충등의 피해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기후온난화 등으로 산림병해충 피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참나무류에는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귀중한 산림을 지키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조경수협회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민족은 어려울때마다 결집하여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지금 재선충방제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소나무와 잣나무 고사목이나 운반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1588-3249로 신고 합시다.** 